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64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진선미·조승래·김문수
강경숙·박성준·백혜련
최혁진·이건태·박정현
김병주·민형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과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 학점의 인정범위, 최소 이수 학점, 이수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9조(학점) ① ----- ----- ----- ----- ----- . 이 경우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 학점의 인정범위, 최소 이수 학점, 이수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